

인천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0나778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0나7787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단21249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해

담당변호사 이창선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황재훈

변론종결 2022. 3. 18.

판결선고 2022. 4. 15.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단21249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D[인천 남구 E건물, F호] 사이에 2018. 3.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99,337,0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9,337,0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 ·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박미영, 판사 최민혜

별지